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중 제2호 마목의 제명 “보건사회관계”를 “보건사회위생관계”로 하고, 동목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동표 제2호 바목중 (3)내지 (5)와 (8)내지 (10)을 각각 삭제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단위 : 원)

구	분	기준	요	액
<b>마. 보건사회위생관계</b>				
(3) 이·미용사 면허증 교부		1건	신규	5,000
			재교부	3,000
<b>사. 체육시설업 관계</b>				
(1) 골프장,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		"		200,000
(2) 골프장,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		"		60,000
(3) 골프장, 스키장업 등록신청		"		100,000
(4) 골프장,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		"		40,000
(5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		"		100,000
(6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		"		40,000
(7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		"		60,000
(8)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		"		20,000
(9)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		"		10,000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마목 (3)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